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전부개정규칙안

2015. 7.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전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실명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책실명제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의(안 제2조)
- 나.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4조)
- 다.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안 제5조)
- 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안 제6조)
- 마.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및 관리(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기록·보존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른 정책실명제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 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주요 정책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주요 정책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 기타 사유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주요정책사업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대외협력사업 중 주요사업

4.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성동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통해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 부서장으로 하며,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중 진행 중인 사업은 별지 제1호의 사업내역서를,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의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거나 제5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사업 현황을 작성·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평가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정책실명제 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과	
연 락 처	02-2286-5162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②담당자 (전화번호)	
③정책사업명			
④선정기준		⑤사업기간	
⑥주요내용			

<기재항목>

-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 ②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 ③ 정책 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